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과학치안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등 민생치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8명(5급 1명, 6급 1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4명(5급 1명, 6급 5명, 7급 9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사 3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42명(6급 9명, 7급 21명, 8급 89명, 9급 20,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28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7명, 8급 1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381명(6급 7명, 7급 34명, 8급 45명, 9급 29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08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1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2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6명, 행정서기 33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23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11명(행정주사 30명, 행정주사보 99명, 공업주사보 39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308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39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6 중 총계 “1,941”을 “1,935”로 하고, 일반직 계 “820”을 “814”로 하며,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4”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 “27”을 “23”으로 하고, 시설주사 “2”를 “3”으로 하며, 공업주사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보 “161”을 “155”로 하며, 공업주사보 “1”을 “2”로 하고, 항공주사보 “2”를 “1”로 하며, 시설주사보 “2”를 “7”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 “227”을 “234”로 하고, 전산서기 및 의료기술서기 “2”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서기보 “83”을 “81”로 하고, “전산서기보 1”을 삭제하며, 공업연구사 “11”을 “10”으로 하고, 기록연구사 및 학예연구사 “3”을 각각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256”을 “135,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09”를 “5,173”으로 하며, 행정주사 “122”를 “114”로 하고, 행정주사보 “496”을 “479”로 하며, 공업주사보 “52”를 “55”로 하고, 간호주사보 “2”를 “1”로 하며, 전산주사보 “3”을 “2”로 하고, 행정서기 “1,545”를 “1,458”로 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 “85”를 “84”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2”를

“61”로 하며, 행정서기보 “608”을 “589”로 하고, 운전서기보 “310”을 “309”로 하며, 공업연구관 “3”을 “2”로 하고, 공업연구사 “23”을 “2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치안산업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9명(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2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서기 13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7명(행정주사 8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5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연구관 1명, 공업연구사 2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381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6명, 공업주사보 28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37명, 공업

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명, 행정서기보 20명, 운전서기보 274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6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건연구사 2명)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5명(공업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10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6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8명(행정주사보 3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1명, 기록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 정원 56명(행정주사 9명, 행정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21명, 공업서기보 1명, 기록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 2명)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8의 정원 140명(행정주사 22명, 행정주사보 94명, 공업주사보 5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8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1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6명, 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8의 정원 6명(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보 5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14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 행정주사 15명, 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22명, 전산주사보 2명, 항공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26명, 전산서기 2명, 의료기술서기 2명, 행정서기보 25명, 전산서기보 1명,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08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1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2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6명, 행정서기 33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23명,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

공업서기보 1명, 공업연구사 3명, 기록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2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략)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947명(행정주사 38명, 행정주사보 116명, 공업주사보 36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간호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3명, 행정서기 395명,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8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58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8명, 공업연구	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11명(행정주사 30명, 행정주사보 99명, 공업주사보 39명, 공업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2명,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행정서기 308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명,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39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

관 1명, 공업연구사 2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41</u>	<u>1,935</u>	-6
일반직 계	<u>820</u>	<u>814</u>	-6
행정사무관	<u>5</u>	<u>6</u>	+1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u>4</u>	<u>3</u>	-1
행정주사	<u>27</u>	<u>23</u>	-4
시설주사	<u>2</u>	<u>3</u>	+1
공업주사	<u>2</u>	<u>1</u>	-1

행정주사보	<u>161</u>	<u>155</u>	-6
공업주사보	<u>1</u>	<u>2</u>	+1
항공주사보	<u>2</u>	<u>1</u>	-1
시설주사보	<u>2</u>	<u>7</u>	+5
행정서기	<u>227</u>	<u>234</u>	+7
전산서기	<u>2</u>	<u>1</u>	-1
의료기술서기	<u>2</u>	<u>1</u>	-1
행정서기보	<u>83</u>	<u>81</u>	-2
전산서기보	<u>1</u>	<삭 제>	-1
공업연구사	<u>11</u>	<u>10</u>	-1
기록연구사	<u>3</u>	<u>2</u>	-1
학예연구사	<u>3</u>	<u>2</u>	-1

.	.	.	
---	---	---	--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35,256</u>	• <u>135,120</u>	-136
일반직 계	• <u>5,309</u>	• <u>5,173</u>	-136
행정주사	• <u>122</u>	• <u>114</u>	-8
행정주사보	• <u>496</u>	• <u>479</u>	-17
공업주사보	• <u>52</u>	• <u>55</u>	+3
간호주사보	• <u>2</u>	• <u>1</u>	-1
	•	•	
	•	•	

전산주사보	<u>3</u>	<u>2</u>	-1
·	·	·	
·	·	·	
행정서기	<u>1,545</u>	<u>1,458</u>	-87
·	·	·	
·	·	·	
공업서기	<u>85</u>	<u>84</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62</u>	<u>61</u>	-1
·	·	·	
·	·	·	
행정서기보	<u>608</u>	<u>589</u>	-19
·	·	·	
·	·	·	
운전서기보	<u>310</u>	<u>309</u>	-1
공업연구관	<u>3</u>	<u>2</u>	-1
·	·	·	
공업연구사	<u>23</u>	<u>21</u>	-2
·	·	·	
·	·	·	